

제22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국문 요약

제22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은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이하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인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Zvezdan Pirtošek) 박사(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학 교수)를 초청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노인인권에 관한 최근 국제적 논의와 한국의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정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노인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최근 발전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의 관점에서 향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우선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과 국제사회의 변화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현재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논의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제네바에서 노인인권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IGWG)의 첫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제 논의의 초점은 노인인권을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이행할 것인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은 이미 모든 보편적 인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연령이 법률, 정책 및 모니터링 체계에서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노인에게 대한 보호가 복지, 보건, 고용, 장애, 돌봄 등 여러 제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인을 존중하는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더라도 빈곤, 비자발적 은퇴, 고독, 돌봄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 제한 등이 지속된다면 충분하지 않으며, 노인에게 대한 존중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연령주의와 노인의 자율성·자기결정권

최성재 이사장은 노인인권 침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연령주의(ageism)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연령주의에 관한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노화와 연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연령주의가 다른 형태의 차별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노인이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령주의는 당사자 자신에게도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고 극복하기가 특히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노인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정작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상태를 묻는 것과 같이 선의로 보이는 행동 속에도 연령주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년기의 빈곤이나 질병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연령을 이유로 노동과 보험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역시 구조적 연령주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자율성의 상실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의사소통, 이동, 재정관리, 돌봄 또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도 노인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체이며, 인지장애 진단이 곧바로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 기반 접근은 장기요양과 돌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결정하고, 돌봄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며, 관계와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당한 제한이나 처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자발적 시설 입소, 신체적 억제, 편의를 위한 약물 사용 등 역시 자유와 존엄, 신체적·정신적 온전성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의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실효적 권리 보장

이혜경 전 원장(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은 AGAC가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AGAC는 국내 약 100명의 고령화 및 노인정책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포럼을 개최하면서 빈곤, 고독, 성별 문제, 사회정의 등 다양한 노인인권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노인 문제를 주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구성하여 현재 국회에 입법청원이 제출된 상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혜경 전 원장은 기본법의 핵심이 노인을 지원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노인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정보가 여러 기관과 절차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 등 개별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법의 성격에 맞게 인권영향평가와 거버넌스 체계 등 절차적 장치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서채완 변호사는 정부 측에서 노인의 개별 권리가 이미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논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법률에 권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

효성 있는 법체계를 위해서는 책임 주체의 명확화, 정부 부처 간 조정, 현실적인 예산과 이행 일정, 세분화된 데이터, 인권영향평가, 독립적인 모니터링, 접근 가능한 구제수단 및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혜경 전 원장 역시 기본법 제정 자체가 목표의 끝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 예산 확보, 정책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입법 옹호 활동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인권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엔 노인인권협약과 국내법의 상호 보완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한국의 노인인권 기본법과 향후 유엔 노인인권협약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제협약은 공통된 법적 언어와 국가의 의무,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을 제공하고, 국내법은 이를 구체적인 제도, 예산, 절차와 구제 수단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백가윤님(국가인권위원회)은 유엔 정부간 실무그룹의 첫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노인인권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백가윤님은 국제협약 논의 과정에서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교차적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노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양한 노인 집단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8/13의 공동제안국인 만큼 향후 정부간 실무그룹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한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인인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노인인권 과제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디지털 기술이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안전 및 사회적 연결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노인이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감

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이 판단한 효율성이나 안전성이 노인 당사자의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와 선호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백가윤님 역시 새로운 기술과 인권에 관한 국제 논의에서 노인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인권을 노인인권협약 논의에만 한정하지 않고 특별절차, 조약기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제도과 권리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과제

조현세 한국헬프에이지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인권 모니터링 경험을 소개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운영평가에 노인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표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실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력, 시설 및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인권 관련 지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과 자원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현세 회장은 한국헬프에이지가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금지원 사업의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은행 계좌와 금융기관, 온라인 금융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취약지역 노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이나 소득보장제도를 법과 정책으로 마련하는 것과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별 제도적·경제적 여건과 실행 역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노인인권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제협력 및 향후 과제

나영재님(국가인권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부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을 이끌어 왔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와 국가인권기구 간 보다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특별절차와 국가인권기구들이 공동으로 연구와 논의를 수행하는 사례처럼 노인인권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 자료수집 및 정기적인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를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초청하여 국제협약뿐 아니라 폭넓은 노인인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팀장은 노인의 생활조건, 인권 보호, 자율성,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과제임을 이번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인권 기본법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립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르토세크 독립전문가는 이번 방한이 공식 국가방문이 아닌 학술적 방문이므로 한국의 특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거나 구체적인 조문에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의 공식 국가방문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공식 국가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노인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면담하고 조사와 협의를 거쳐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노인인권 기본법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식 방문이 국내외 노인인권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노인인권 정책이 보호에서 참여로, 복지와 시혜에서 권리로, 선의에 의존하는 접근에서 국가와 사회의 명확한 책무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과 유엔 노인인권협약 마련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한국의 경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